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목 “폐기 및 운반 등”을 “방사성폐기물관리 및 운반 등”으로 한다.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64조제5호”를 “법 제64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4조제4호”를 “법 제64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64조제5호”를 “법 제64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의 천층처분을 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이외의 천층처분 방식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1. 동굴처분 방식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해서는 200년 이하 제103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 것

2.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 것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5까지 및 제105조의2부터 제10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

· 운영자는 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사업을 개

시한 날(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을 개시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보고서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이 완결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부분에 대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을 것
3. 제1호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부분에 대하여 이 조부터 제10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내용 및 방법등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①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에 관한 사항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4. 위해도 분석에 관한 사항

5.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6.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7.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운영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운영 및 보수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9.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1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1.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1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이라 한다)의 경우: 해체에 관한 사항

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이라 한다)의 경우: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4(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①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및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

2.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에 품질보증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수행할 것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종합적인 안전성은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의 사항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할 것

4. 안전성평가 당시 해당 시설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5.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시간 경과에 따른 안전도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할 것

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은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경년열화현상에 대하여 안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여유도가 확보되도록 할 것

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경년열화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과 안전 여유도가 보증되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중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목적, 그 원리적 차이 또는 설계의 특성상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4조의5(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평가보고서의 보완 또는 수정에 필요한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제105조의2(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법 제6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2. 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제105조의3(방사성 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방사성 폐기물저장시설등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사성 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방사성 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 등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방사성 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폭방사선량이 제2조제4호 및 별표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될 것

4.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해체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④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68조의4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 승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계획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폐쇄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으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폐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폐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④ 법 제68조의4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을 받은 자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승인받은 사항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의5(폐쇄검사) ①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운영자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1. 제105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

2.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폐쇄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쇄계획에 따라 폐쇄가 시작되었을 때
2. 기존 시설물을 철거할 때
3. 지하 공간을 메울 때
4. 폐쇄계획에 따라 폐쇄공정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5. 폐쇄계획에 따라 폐쇄 후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6. 폐쇄계획에 따른 모든 폐쇄가 종료되었을 때

제105조의6(폐쇄 후 관리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5항에 따라 폐쇄 후 관리기간 중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운영자가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폐쇄 후 관리계획서에 적합하게 폐쇄 후 관리를 이행하는지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5항에 따라 폐쇄 후 관리종료 시점에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운영자가 승인받은 폐쇄 후 관리계획에 따라 적합하게 폐쇄 후 관리의 이행을 완료하고 폐쇄 후 관리종료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을 완료하였는지 점검한다.

③ 제1항의 폐쇄 후 관리기간 중 점검과 제2항의 폐쇄 후 관리기간 종료 시점에 대한 점검의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6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6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제106조 후단 중 ““발전용원자로설치자””를 “제19조 중 “제17조”는 “제96조”로 보고,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신청”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건설·운영 허가 신청”으로, “발전용원자로설치자””로 한다.

제112조제1항 본문 중 “설계의 승인(이하 이 장에서 “설계승인”이라 한다)”을 “설계승인”으로 한다.

제114조의2부터 제11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신청 등) ① 법 제77조의2 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의 설계 승인을 받으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의2제1항 본문의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저장용기등의 설계, 재료, 구조 및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설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위원회는 저장용기의 설계가 제2항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4조의3(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변경신청) 법 제77조의2 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승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의4(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114조의2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승인신청서 제출
일부터 45일 이내에 승인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4조의5(승인의 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제114조의2에 따른 저장용기등
의 설계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
가로 필요한 기간

제114조의6(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①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라 저장용
기등의 제작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별 검사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밀 또는 수밀이나 내부식이 요구되는 재료 또는 부품에 대하여 재
료시험 및 압력시험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2. 용접부위에 대한 외형확인 및 비파괴시험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3. 제작이 완료되어 누설, 차폐, 열전달 등 성능시험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저장용기등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1.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당시의 설계, 재료, 구조 및 성
능과 일치할 것

2.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 등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보
증에 관한 업무가 수행되었을 것

제1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4조제3호”를 “제64조제1항제3호”로 한다.
별표 7 제1호아목 중 “폐기시설등”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으로 하고,
같은 표 별표 7 제2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아목 및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 사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68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
체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사. 법 제68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
쇄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자.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별표 7 제4호다목 중 “(법 제34조”를 “(법 제34조 및 제68조의3제3항”으로 하
며, 같은 호 자목 중 “폐기시설 등”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카목 및 타목을 각각 카목, 타목 및 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7호가목 중 “제76조제
1항 단서”를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및 제77조의2제1항 단서”로 하며, 같은 표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
111조제1항제15호”를 “법 제111조제1항제16호”로 한다.

차. 법 제68조의4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관한 검사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점검

파.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장용기등에 관한 검사

별표 11 제2호(13) 표 외의 부분 중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를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로 하고, (13)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내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사 또는 운영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건설공사 또는 운영을 중단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2호	2개월	8억원	4개월	16억원	8개월	32억원
나. 법 제6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3호	3개월	12억원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다. 법 제64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5호	2개월	8억원	4개월	16억원	8개월	32억원
라. 법 제65조제2항, 제65조의2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7호	2개월	8억원	4개월	16억원	8개월	32억원
마. 법 제68조의2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7호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12개월	50억원
바.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제89조제5항, 제94조, 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8호	2개월	8억원	4개월	16억원	8개월	32억원
사.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8호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12개월	50억원
아.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8호	1개월	4억원	2개월	8억원	3개월	12억원
자. 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6호	1개월	4억원	2개월	8억원	3개월	12억원
차. 법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9호	1개월	4억원	2개월	8억원	3개월	12억원

별표 12 제2호 위반행위란 중 “드.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드. 법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르목부터 트목을 각각 브목부터 호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르목 및 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르.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300	450	900
--	----------------	-----	-----	-----

브. 법 제68조의4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300	450	900
--	----------------	-----	-----	-----

별표 12 제2호프목을 기목으로 하고, 제2호호목부터 지목까지를 각각 리목부터 피목으로 하며, 니목과 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니. 법 제7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5호	300	450	900
---	----------------	-----	-----	-----

디. 법 제77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200	300	600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6장 폐기 및 운반 등</u>	<u>제6장 방사성폐기물관리 및 운반 등</u>
제96조(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 허가 신청) 법 제6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의 건설·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건설·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제99조제2항 각 호의 범위에서 <u>법 제64조제5호</u> 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설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6조(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 허가 신청) ----- ----- ----- ----- ----- ----- ----- ----- ----- ----- ----- ----- ----- ----- ----- <u>법 제64조제1항제5호</u>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제99조(허가기준) ① <u>법 제64조제4호</u>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99조(허가기준) ① <u>법 제64조제1항제4호</u> -----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1. 2. (생략)

② 법 제6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 부지 안에 2개 이상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그 부지의 모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적용한다.

1. 동굴처분을 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00년 이하

2. 동굴처분 외의 천층처분을 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300년 이하

제103조(정기검사)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

1.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4조제1항제5호-----

-----.

-----.

1. 동굴처분 방식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해서는 200년 이하

2. ----- 이외의 천층처분 방식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해서는 -----

제103조(정기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구조·설비 및 성능이 법 제64조제2호 및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

2.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및 처분이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

<신 설>

1. 법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 것

2.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 것

제104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는 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사업을 개시한 날(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을 개시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보고서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5조의2제1항

<신 설>

단서에 따라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이 완결된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부분에 대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을 것

3. 제1호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부분에 대하여 이 조부터 제10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①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에 관한 사항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4. 위해도 분석에 관한 사항

5.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6.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7.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운
영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운영 및 보수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9.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
에 관한 사항

1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
에 따른 방사선 비상계획에 관
한 사항

11.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
항

1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
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

<신 설>

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등”이라 한다)의 경우: 해체에 관한 사항

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등”이라 한다)의 경우: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4(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① 법 제65조의2 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및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

2.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에 품질보증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수행할 것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종합적인 안전성은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할 것

4. 안전성평가 당시 해당 시설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5.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시간 경과에 따른 안전도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할 것

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은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경년열화현상에 대하여 안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여유도가 확보되도록 할 것

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건설·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경년열화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과 안전 여유도가 보증되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중

<신 설>

<신 설>

해당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목적, 그 원리적 차이 또는 설계의 특성상 해당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등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4조의5(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평가보고서의 보완 또는 수정에 필요한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제105조의2(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신 설>

법 제6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2. 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제105조의3(방사성 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 등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등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폭
방사선량이 제2조제4호 및 별
표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
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될 것

4.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해체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8
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인 처리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
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④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등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
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신 설>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의4(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68조의4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 승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계획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폐쇄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으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폐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신 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폐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④ 법 제68조의4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을 받은 자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승인받은 사항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의5(폐쇄검사) ①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운영자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

<신 설>

사성 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1. 제105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

2.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폐쇄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쇄계획에 따라 폐쇄가 시작되었을 때

2. 기존 시설물을 철거할 때

3. 지하 공간을 메울 때

4. 폐쇄계획에 따라 폐쇄공정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5. 폐쇄계획에 따라 폐쇄 후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6. 폐쇄계획에 따른 모든 폐쇄가 종료되었을 때

제105조의6(폐쇄 후 관리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5항에 따라 폐쇄 후 관리기간 중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운영자가 법 제68조의4제2항에

제106조(준용규정)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에 관하여는 제25조·제26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견 원자로설치자”는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로 본다.

따라 승인받은 폐쇄 후 관리계획서에 적합하게 폐쇄 후 관리를 이행하는지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5항에 따라 폐쇄 후 관리종료 시점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등 건설·운영자가 승인받은 폐쇄 후 관리계획에 따라 적합하게 폐쇄 후 관리의 이행을 완료하고 폐쇄 후 관리종료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을 완료하였는지 점검한다.

③ 제1항의 폐쇄 후 관리기간 중 점검과 제2항의 폐쇄 후 관리기간 종료 시점에 대한 점검의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6조(준용규정)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등에 관하여는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6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 제19조 중 “제17조”는 “제96조”로 보고,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신청”은 “방사성 폐기물관리 시설등 건설·운영 허가 신청”

제112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①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운반용
 기”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
 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
 반용기의 형식별로 설계의 승인
 (이하 이 장에서 “설계승인”이
 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승인을 받은 운반용기를 반
 복하여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신설>

으로, “발전용원자로설치자”--
 --.

제112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①

 ----- 설계승인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4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
 기등의 설계승인신청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의 설계
 승인을 받으려는 원자력관계사
 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법 제77조의2제1항 본문의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설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저장용기등의 설계, 재료, 구
조 및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설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위원회는 저장용기의 설계가
제2항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4조의3(사용후핵연료 저장용
기등의 설계승인 변경신청) 법
제77조의2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항 본문의 후단
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설계승인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제114조의4(심사계획의 통보) 위

<신 설>

<신 설>

위원회는 제114조의2에 따른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승인신청서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승인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4조의5(승인의 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제114조의2에 따른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제114조의6(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①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별 검

	<u>사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기밀 또는 수밀이나 내부식</u> <u>이 요구되는 재료 또는 부품에</u> <u>대하여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u> <u>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u> <u>2. 용접부위에 대한 외형확인</u> <u>및 비파괴시험이 가능하게 되</u> <u>었을 때</u> <u>3. 제작이 완료되어 누설, 차폐,</u> <u>열전달 등 성능시험이 가능하</u> <u>게 되었을 때</u> <u>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저</u> <u>장용기등이 다음 각 호에 모두</u> <u>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u> <u>다.</u> <u>1.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u> <u>승인 받은 당시의 설계, 재료,</u> <u>구조 및 성능과 일치할 것</u> <u>2.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u> <u>및 기준 등이 위원회가 정하여</u> <u>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u> <u>3.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u> <u>승인 받은 품질보증계획서에</u> <u>따라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가</u> <u>수행되었을 것</u>
제174조(환경상의 위해방지) 법 제11조제3호, 제12조제5항제2	제174조(환경상의 위해방지) --- -----

호, 제21조제1항제3호, 제36조 제1항제3호, 제46조제3호 및 제64조제3호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 (제154조제2항 관련)

1.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지정에 관한 안전성 심사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 사. (생략)

아. 법 제6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2.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에 관한 안전성 심사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 마. (생략)

<신설>

<신설>

제64조제1항제3호

1. 2. (현행과 같음)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 (제154조제2항 관련)

1. ---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법 제6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2.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법 제68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사. 법 제68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승인에 관련된

바. (생략)

<신설>

사. (생략)

3. (생략)

4.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및 확인·점검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 나. (생략)

다. 법 제28조제3항(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상황의 확인·점검

라. ~ 아. (생략)

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기시설 등의 설치·운영 및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에 관한 검사

<신설>

차. (생략)

카. (생략)

<신설>

안전성 심사

아. (현행과 같음)

자.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차.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제28조제3항(법 제34조 및 제6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상황의 확인·점검

라. ~ 아. (현행과 같음)

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운영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에 관한 검사

차. 법 제68조의4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관한 검사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점검

카. (현행과 같음)

타. (현행과 같음)

파.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장용기등에 관한 검사

타. (생 략)

5. ~ 6. (생 략)

7. 법 제1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조치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0조제1항 단서,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0조의2제1항 단서,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단서, 제53조제1항 단서, 제60조제1항 단서, 제63조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나. ~ 카. (생 략)

7의2. (생 략)

8. ~ 11. (생 략)

12. 법 제111조제1항제15호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 아. (생 략)

하. (현행과 같음)

5. ~ 6. (현행과 같음)

7. -----

가. 법 제10조제1항 단서,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0조의2제1항 단서,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단서, 제53조제1항 단서, 제60조제1항 단서,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및 제7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나. ~ 카. (현행과 같음)

7의2. (현행과 같음)

8. ~ 11. (현행과 같음)

12.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 아. (현행과 같음)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11]

(13)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내에 그 허가받은 산업을 개시하지	법 제66조제1항제2호	2개월	8억원	4개월	16억원	8개월	32억원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11]

(1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내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	법 제66조제1항제2호	2개월	8억원	4개월	16억원	8개월	32억원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중단한 경우							
나. 법 제6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3호	3개월	12억원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다. 법 제64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5호	2개월	8억원	4개월	16억원	8개월	32억원
라. 법 제65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7호	2개월	8억원	4개월	16억원	8개월	32억원
마. 법 제68조제2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7호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12개월	50억원
바. 법 제68조제3항, 제89조제5항, 제94조, 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8호	2개월	8억원	4개월	16억원	8개월	32억원
<신 살>	<신살>	<신살>	<신살>	<신살>	<신살>	<신살>	<신살>
<신 살>	<신살>	<신살>	<신살>	<신살>	<신살>	<신살>	<신살>
사. 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6호	1개월	4억원	2개월	8억원	3개월	12억원
아. 법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9호	1개월	4억원	2개월	8억원	3개월	12억원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8조 관련)

1. (생 략)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 하. (생 략)				
거. ~ 히. (생 략)				
고. ~ 호. (생 략)				
구. ~ 후. (생 략)				
그. ~ 느. (생 략)				
드.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300	450	900

사 또는 운영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건설공사 또는 운영을 중단한 경우							
나. 법 제6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3호	3개월	12억원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다. 법 제64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5호	2개월	8억원	4개월	16억원	8개월	32억원
라. 법 제65조제2항, 제65조의2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7호	2개월	8억원	4개월	16억원	8개월	32억원
마. 법 제68조의2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7호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12개월	50억원
바.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제89조제5항, 제94조, 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8호	2개월	8억원	4개월	16억원	8개월	32억원
사.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8호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12개월	50억원
아.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8호	1개월	4억원	2개월	8억원	3개월	12억원
자. 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6호	1개월	4억원	2개월	8억원	3개월	12억원
차. 법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9호	1개월	4억원	2개월	8억원	3개월	12억원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8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 히. (현행과 같음)				
고. ~ 호. (현행과 같음)				
구. ~ 후. (현행과 같음)				
그. ~ 느. (현행과 같음)				
드.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300	450	900

